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2598

발의연월일: 2021. 9. 15.

발 의 자 : 추경호·조명희·김상훈

김선교 · 김용판 · 윤창현

김예지 • 이주환 • 성일종

백종헌 · 엄태영 · 이종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및 관세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이 특례들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설비투자 촉진 등을 위한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등에 대한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18조의2제1항, 제121조의22제1항제1호 및제2호).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 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 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내 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국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 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21 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 년 12월 31일-----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 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 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 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내 --2024년 12월 31일-----(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

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증설한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 1. 2. (생략)
- ② ~ ⑥ (생 략)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제1 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 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내에서 창업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 설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 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 1. 2. (생략)
- ② ~ ④ (생 략)
-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u>.</u>
· 1.·2. (현행과 같음)
2 ~ ⑥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00041-7 10.61 01.61
<u>2024년 12월 31일</u>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
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
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 021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보건 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2.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식품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업

② ~ ⑧ (생 략)

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
1				• 	
					2
	. 4. 3	100] 01			_
<u>02</u>	4년 .	12월 31	<u>일</u>		
2					
<u>20</u>)24년	12월 3	1일		
(2)	~ (8)	(현행고	가 같은	$\left(\frac{1}{1}\right)$	